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6. 3 선고 2019재나4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A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B

변론 종결 2020. 5. 13.

판결 선고 2020. 6. 3.

제1심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가소45136 판결

재심대상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8나4071 판결

주 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 항 소 취 지 및 재 심 청 구 취 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527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 원고는 2002. 7. 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서울 강동구 C 다세대주택에 대한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피고로부터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가단8757(본소) 공사대금, 2003가단27536(반소) 손해배상 사건에 관하여, 2003. 10. 29.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3,650만 원을 지급하되 2003. 10. 31.까지 3,000만 원, 원고의 하자보수 완료일까지 650만원을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소45136호로 이 사건 신축공사에 기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18. 11. 12. 원고의 소 제기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나4071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9. 5. 17.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어 공사대금채무가 3,650만 원으로 확정되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조정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15년에 걸쳐 같은 내용의 공사대금 청구를 반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소 제기는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9다15489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8. 29.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하여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정은 원고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무효이고 피고가 허위로 위조된 2006.9. 15.자

거래명세표를 증거로 제출하여 원고가 하자보수를 불이행한 것처럼 거짓 주장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재심사유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라 함은, 그 위조된 문서 등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법원이 그 위조문서 등을 참작하지 않았더라면당해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조문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 가지고도 그 판결의 인정 사실을 인정할 수 있거나 그 위조문서 등이 없었더라면 판결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위조문서 등이 재심대상 판결이유에서 가정적 또는 부가적으로 설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인용된 것이고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정에 관한 것이었을 때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4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소 제기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한 것이고, 원고가 그 위조를 주장하는 2006. 9. 15.자 거래명세표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 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송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하여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재누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소 제기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경우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본안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본안에 관한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평근, 판사 민철기, 판사 김광진